

#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3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7. 6. .  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6개 시·군(강원도 영월군, 원주시, 평창군, 홍천군, 횡성군, 충청북도 제천시)이 협력하여 관광마케팅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.
- 「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」의 규정에 의거 『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』 운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

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## 3. 주요 사업내용

- 관광마케팅을 위한 공동사업 협의 운영
  - 관광마케팅협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관한 사항
  - 국제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
  - SNS 홍보·운영에 관한 사항
  - 6개 시·군 축제 지원 및 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
  -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등
- 운영경비는 각 시·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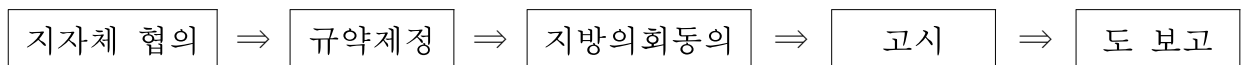
#### 4. 협의회 운영현황

구 분	내 용
구 성 일	2007.11.06.
지자체 구성	6개 시군(원주시, 홍천군, 횡성군, 평창군, 영월군, 제천시)
의 장 시 군	각 시군 관광관련 과장(윤번제로 1년씩) ※ 2017년 의장시군 : 홍천군
예 산 구 성	150,000천원 (25,000천원×6개 시군)
평창군부담예산	25,000천원
세부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동 홍보물 제작</li> <li>- 블로거 SNS채널 운영</li> <li>- 축제 팸투어 및 홍보</li> <li>- 해외 박람회 관광홍보</li> <li>- 워크숍 개최 등</li> </ul>

#### 5. 향후계획

○ 의결 후 인터넷 홈페이지(군보) 고시 및 강원도 보고

※ 행정협의회 설립절차



- 붙임 1.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(안) 1부  
 2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

##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.

1. 강원도 원주시
2. 강원도 홍천군
3. 강원도 횡성군
4. 강원도 평창군
5. 강원도 영월군
6. 충청북도 제천시

제3조(협의회 사무소)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.

제4조(협의사항) 본 협의회는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.

1. 관광마케팅협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관한 사항
2. 국제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
3. SNS 홍보·운영에 관한 사항
4. 6개 시·군 축제 지원 및 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
5.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회원 시·군의 건의로 협의회에 부의된 사항

제5조(조직)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③ 협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.

④ 간사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 주관부서의 주무담당이며, 회의운영의 기록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6조(의장)** ① 의장은 회원 시·군간에 협의하여 윤번제로 하되, 규약 제정에 따른 최초 의장 시·군은 홍천군으로 한다.

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회의개최)**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1회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, 전체 위원이 참석한다.

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,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.

④ 의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, 회의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의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의결과 처리)**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협의사항의 조정)**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0조(협의방법)**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안건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,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·표결 권한을 부여한다.

**제11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업무 주관부서의 주무담당과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을 위원으로 하며, 실무협의회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반안건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여처리할 수 있다.

④ 실무협의회장은 의장 시·군 관광업무 주관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하되,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담당으로 지정하여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.

**제12조(경비부담)**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각 시·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.

**제13조(사무 인계인수)** 의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의장에게 인계·인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(규약개정)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.

제15조(보칙)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**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**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**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**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**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

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**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**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**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**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